



시 보



제1719호 2025. 12. 1. (월)

고시 · 공고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안 발령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6
-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8
-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훈령 제872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규정 전부를 다음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직장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 ① 목포시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하키팀, 육상팀, 복싱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부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2.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한다.

가. 하키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18명 이내로 한다.

나. 육상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다. 복싱팀은 감독 1명, 선수 2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팀을 총괄 및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팀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③ 부장은 전지훈련계획,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부단장의 지휘를 받아 팀운영 전

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④ 감독은 선수의 발굴육성 및 훈련, 출전, 합숙소 관리 등 선수생활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의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훈련일지를 작성한다.

⑥ 부장 및 감독은 수립된 훈련계획 등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 구성시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에는 적어도 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

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및 보수

제6조(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7조(임용) ① 지도자 및 선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8. 명함판 사진 2매, 반명함 사진 2매
9.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지도자 및 선수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시장과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와 시장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목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선수등급) 임용 선수에 대한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되 감독의 의견을 들어 선수들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종목의 경우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수등급별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호봉조정) 호봉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군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고, 유능한 지도자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다른 기관, 기업체의 직장·실업팀 지도자와 선수를 영입하여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기간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지도자의 최고호봉은 25호봉, 선수의 최고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2. 호봉승급은 경력 및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3. 초임호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독 : 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기준

나. 코치 및 트레이너 : 일반직 6급 공무원 1호봉기준

다. 선수(A) :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기준

라. 선수(B) : 일반직 7급 공무원 2호봉기준

마. 선수(C) : 일반직 7급 공무원 1호봉기준

제13조(급여) 급여는 월봉급여,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로 구분 지급하되 지도자 및 선수의 경력과 성적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선수등

급 기준에 의해 확정된 호봉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공무원 직종별 연봉 및 봉급표에 의하여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중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3.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지급한다.
4.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를 4, 5, 8, 10, 11월 중 보수지급일에 각각 지급한다.

제14조(기타수당) 지도자 및 선수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훈련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도자 및 선수에게 70천원을 지급한다.
2. 지도자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감독에게 200천원, 코치에게 150천원을 지급한다.
3. 가족수당은 공무원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0천원을 지급한다.
5. 개인 종목의 경우 임용이 예정된 우수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훈련비 및 관리비) 지도자 및 선수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훈련비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제16조(퇴직금) 목포시청 직장운동부에 재직하다 퇴직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퇴직금의 산정은 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근무일 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월봉급액 + 훈련수당 + 월평균상여금) 지급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총근무일 수는 보수지급 관계서류, 선수 등록대장 등 공부 기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퇴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제3장 복무 및 징계

제17조(복무) ①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및 선수의 휴가는 연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20일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④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병가를 할 수 있다. 다만, 7일 이상 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할 수 있다.

2.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연간 180일의 병가를 할 수 있다.

⑤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 요청에 의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한다.

⑥ 지도자 및 선수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연간 20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조사 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지도자와 선수는 국가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제18조(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9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훈련계획) ① 기초훈련은 오전에 체력연마, 오후에 기술연마를 한다.

② 동계와 춘계에는 보강훈련을 실시한다.

③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중점훈련을 실시한다.

④ 상대전력 평가분석과 경기장 적응을 위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제20조(출전 및 승인) 전국규모 경기대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하여야 하며, 출전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21조(합숙소운영) ① 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에 따른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한다.

② 선수단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다.

③ 선수단의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문고, TV 등 그 밖의 위락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④ 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 비, 공공요금, 약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합숙소 운영시 지도자와 선수의 합숙소를 구분하며, 합숙소는 1인 1실(또는 2인 1실)형태 등 최저 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⑥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⑦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입소자격) 합숙소의 입소자는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합숙소 내 비품 및 시설을 훼손·분실하는 행위
3. 합숙소 내 다른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5. 기타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24조(지도자의 의무) 지도자(감독,코치 등)는 선수의 개인공간(합숙소)을 방문하여 훈련시간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입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합숙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입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별표 2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제27조(징계사유)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시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시장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9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제30조(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제2호의 휴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대한 처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처우를 유급으로 정할 경우 월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이적 동의) ① 목포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인사관계는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 복무관계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회계관계는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보수 및 수당관계는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일반사항은 관련이 있는 목포시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근로계약서

목포시장(이하 “직장운동경기부” 이라 한다)과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선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종목)	근무직위

1.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활동을 하고, 목포시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선수 _____ 서명)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담당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선수”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단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소속팀에서 계약기간동안 담당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 범위

-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근무지(근무장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하키구장, 육상투척경기장 등) 및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까지로 한다.
- ②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이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단,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한다.
-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선수 _____ 서 명)
-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_____ 서 명)

7. 유급휴일

-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

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8. 연차유급휴가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9.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5조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10.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5조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

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보수

① 임금

- 월급(본봉) : _____ 원 - 월급(연봉) : _____ 원

- 명절수당 : _____ 원 (본봉의 60%/설, 추석 지급)

- 정근수당 : _____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기타급여(제수당 등)

· 훈련수당 : _____ 원, 정근수당가산금 : _____ 원

· 체력단련수당 : _____ 원, 지도자수당 : _____ 원

· 가족수당 : _____ 원

-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지급시기

-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20일에 연봉의 1/13을 “선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 설·추석(명절)에 나머지 $1/13 \times 1/2$ 를 지급한다.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선수”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기지급한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 “선수”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3. 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14. 지식재산권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직장 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6. 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17.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 3.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
-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18.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 2.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 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목포시장 (인)

근로자(선 수) (인)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_____ (인)

생년월일 : _____

성 별 : _____

상기인은 현재 _____ 팀에서
선수 활동하였으나 타 소속으로 이적하여
선수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발급기관 _____ (직인)

감독 _____ (인)

- ※ 소속이 없이 무소속으로 등록할 시 거주 지역 목포시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밑줄 부분은 빈칸 없이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신청내용과 이적동의서 내용이 상이할 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목포시 영산로318번길 13-1	목포시 용당동 1100-20	2025.12.1.	건물 멸실
2	목포시 양을로 120-4	목포시 산정동 256-5	2025.12.1.	건물 멸실
3	목포시 달성길105번길 13	목포시 죽교동 93-14	2025.12.1.	건물 멸실
4	목포시 양을로220번길 6	목포시 용당동 1195-2	2025.12.1.	건물 멸실
5	목포시 마인계터로4번길 10-1	목포시 북교동 272-6	2025.12.1.	건물 멸실
6	목포시 마인계터로4번길 12	목포시 북교동 272-1	2025.12.1.	건물 멸실
7	목포시 호정로13번길 6-3	목포시 산정동 78-52	2025.12.1.	건물 멸실
8	목포시 청호로85번안길 14-2	목포시 대성동 212-72	2025.12.1.	건물 멸실
9	목포시 만세로35번길 5-1	목포시 대성동 118-24	2025.12.1.	건물 멸실
10	목포시 자유로10번길 5	목포시 산정동 1099-14	2025.12.1.	건물 멸실
11	목포시 노적봉길 44	목포시 죽교동 399-111	2025.12.1.	건물 멸실
12	목포시 노적봉길 44-1	목포시 죽교동 399-112	2025.12.1.	건물 멸실
13	목포시 노적봉길 38-4	목포시 죽동 230-14	2025.12.1.	건물 멸실
14	목포시 연산로 134-1	목포시 연산동 940-2	2025.12.1.	건물 멸실
15	목포시 동부로37번길 6	목포시 용당동 970-350	2025.12.1.	건물 멸실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2. 01.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3. 주요내용
 - 센터의 위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 시설의 위탁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시설의 이용 신청, 이용료,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 강사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1
5.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01. ~ 2025. 12. 22.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 18:00까지 목포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산업지원팀)

- 주소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61-270-8871, 팩스 : 061-270-3592
- 이메일 : jjs012@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061-270-8871) 로 문의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연산동 1300번지에 있는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체육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3. 근로자의 성별·연령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제공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자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식당, 작업복세탁소 등
2. 체육시설 : 피트니스실 등
3. 문화시설 :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
4.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과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센터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시에 시설보호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승인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의 이용 현황을 수집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신청 및 승인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로 정하는 이용신청 시설 및 강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이용료 납부 및 감면 현황을 성별로 분리하여 통계화하고, 이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 후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강사 운용)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
2. 이용 승인 대장
3. 성별·연령 등 이용자 현황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대장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허가 및 이용신청 시설

구분	시 설 명	비 고
사용허가	식당	
이용신청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별표 2]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이용료

1. 시설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이용료	비 고
다목적강의실	2시간	20,000	■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회의실	2시간	10,000	
체육시설	1개월	20,000	

2. 교육 수강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1주 수강시간)	수강료(월)	비 고
체육·문화·취미· 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시간 이하	25,000	■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초과	30,000	

※ 수강료는 상기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복세탁소 요금표

(단위: 원)

구 분	가 격	비 고
하복, 춘추복	1,000원(1벌당)	상·하의 각각 500원
동복, 특수복	2,000원(1벌당)	상·하의 각각 1,000원

[별지 제1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성별	남 / 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이용시설 (프로그램)			
이용일시 (기간)	[시작] 년 월 일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요일) :	까지(회)	
이용목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감면사유 (해당시)			
비고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시설(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 (필요시)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서류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

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기간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년 월 일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목포시장 귀하

이용 승인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시설 (프로그램)				
이용목적				
이용 승인기간		[시작] 년 월 일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요일) : 까지(회)		
이용료		금 원		
감면여부		여 ☐ 부 ☐		
감면사유				

이 용 시 설 (프로그램)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단위: 원)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프로그램)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이 용 시 설 (프로그램)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부터 : 까지	
불허가 사유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이용 승인 시설 (프로그램)				
이용 승인 기간				
납부한 이용료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목포 종합경기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목포시민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목적 및 조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조~제10조 체육시설 개방,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21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
- 제21조~제31조 체육시설 위탁관리 근거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생활체육시설)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 부패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22.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 18:00까지 목포시장(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스포츠산업과(종합경기장운영팀)

- 주소 : (58601)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 23, 목포시청 스포츠산업과
- 전화 : 061-270-4467, 팩스 : 061-270-3648

○ 이메일 : bsh100@korea.kr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스포츠산업과(☎ 061-27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 종합경기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하며,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 및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료"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항과 4항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 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경조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영리 목적 행사 및 상행위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2월)	비 고
조기	06:00~08:00	06:00~09:00	일시사용 4시간 미만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

행위", "중계"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④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관람료) ① 전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대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④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
5. 성희롱·성폭력, 성별혐오 표현 등 타인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위탁사유 발생시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 부담능력 등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제27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이용료 현황, 사용료 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하며,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수탁자 전액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도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8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운영요원에게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감독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목포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목포시 대양산단로 23(대양동)
·목포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목포시 대양산단로 23(대양동)
·반다비체육센터	목포시 대양산단로 199번길 93-41(용해동)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주경기장	필드	1일	250,000	375,000	500,000	750,000	
	트랙		120,000	180,000	240,000	360,000	
보조경기장	필드	1일	150,000	225,000	300,000	450,000	
	트랙		70,000	105,000	140,000	210,000	
반 다 비 체육센터		1일	90,000	135,000	180,000	270,000	

○ 사용시간은 제12조(사용시간)의 주간 사용시간을 적용한다.

○ 야간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영화촬영
	TV	라디오	TV	라디오	
목포종합경기장	40,000	30,000	20,000	15,000	TV중계 방송료와동일
반다비체육센터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4]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제13조 관련)

구 분	전 광 판	라이트(조명)	음향시설
목포종합경기장	6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기 본료×1/30×사용일)	3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 기본료×1/30×사용일)	기본료(30,000) + (5,000원 × 마이크대수
반다비체육센터	없 음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 기본료×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 전광판과 조명탑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료는 둘 중 1가지에만 적용한다. ○ 야간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구 분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목포종합경기장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전기요금	실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도시가스 등)
반다비체육센터		

[별표 5]

체육시설 외부광고 등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애드 벌룬	선 전 광 고 게 시	비고
목포종합 경기장	1일 1개 5,000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가산 연간 200,000	
목포반다비 체육센터	1일 추가 3,000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가산 연간 350,000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1일초과 10,000가산 연간 1,000,000	

사용료 감면 (제15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할인율)	비 고
전 용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	80%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80%	
	5.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9.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80%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0%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사용료 감면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 (대 표 자)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참여 예정인원		총 인 원	명	임원(선수)	명	입 장 자	명	
부 속 시 설		라이트	음향(마이크)	전 기	전광판	중계방송	냉난방	
		상행위						
관 램 권	종 류	개 인			단 체			합 계
		일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노	일 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노	
	발행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매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21 22 23

신청인

①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	신청인	접수일시	사용일시	사용목적	참여 인원	전화번호	사용료	결 재		
								계	담 당	소 장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체 명		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 (대 표 자)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참여 예정인원		총 인 원	명	임원(선수)	명	입 장 자	명	
부 속 시 설		라이트	음향(마이크)	전 기	전광판	중계방송	냉난방	
		상행위						
관 램 권	종 류	개 인			단 체			합 계
		일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노	일 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노	
	발행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매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관 랑 권 검 인 신 청 서

행사 또는 경기명			
		개 최 일 시	
일반권	종 별	액 면 가	매 수
		원권	매
		"	"
		"	"
		"	"
	계	"	"
할 인 권		"	"
		"	"
		"	"
		"	"
		"	"
	계	"	"
합 계		"	"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			

관 랑 권 잔 표 확 인 서

행 사 또 는 경 기 명					
전 용 자					
관 랑 권 종 별		액 면 가	발행매수	매 표 수	잔 표 수
일 반 권					
	계				
할 인 권					
	계				
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					

관 랐 료 정 산 서

행사 또는 경 기 명						
전 용 자			개 최 일 시			
관람권종류	일 반 권		할 인 권		계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계						
총 매 표 액	사 용 료 공 제 액		전 용 자 인 도 액		사용료공제내용	
원	원		원			

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